**2009년 정령 제218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령

내각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산정 방법)

**제1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과징금 대상기간(이하, 단지 “과징금 대상기간”이라 한다)에서 인도한 상품 또는 제공한 역무의 대가금액을 합계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일. 과징금 대상기간에 있어서 상품의 중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파손, 역무의 부족 또는 불량 그 외 사유로 인해 대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경우 - 공제한 액수

이. 과징금 대상기간에 상품이 반품된 경우 - 반품된 상품의 대가금액

삼.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인도 또는 제공 실적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가 서면에 의해 명확한 계약(일정기간 내의 실적이 일정액 또는 수량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었을 경우 - 과징금 대상기간 에서의 그 실적에 대해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리베이트(일정기간 내의 실적에 따라 다른 비율 또는 액수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가장 낮은 비율 또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제2조**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징금 대상행위(이하, 단지 “과징금 대상행위“라고 한다)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대가가 그 판매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정해지는 경우에 있어서, 과징금 대상기간에서 인도한 상품 또는 제공한 역무 대가금액의 합계액과 과징금 대상기간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의 판매 또는 역무제공 대가금액의 합계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일으킬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동항에 규정하는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과징금 대상기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의 판매 또는 역무제공 대가금액을 합계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전조(제3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 소비자의 특정)

**제3조**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징금 대상기간에 해당 상품 또는 역무 거래를 한 일반소비자로 특정된 것은 해당 일반소비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제공을 받은 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와 관련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소비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구입 또는 역무 의 제공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이 과징금 대상 기간 내인 것이, 해당 상품의 구입 또는 역무 제공의 대가지불에 충당한 금전에 관한 영수증, 해당 상품의 구입 또는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관한 계약서, 그 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특정된 자(다음 조 및 제5조 제1항에서 “특정 소비자”라고 한다)로 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구입액의 산정방법)

**제4조**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구입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항의 신청을 한 특정소비자가 과징금 대상기간에 인도를 받은 상품 또는 제공을 받은 역무의 대가금액을 합계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일. 과징금 대상기간에 있어서 상품의 중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파손, 역무의 부족 또는 불량, 그 외 사유에 의해 대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된 경우 - 공제된 금액

이. 과징금 대상기간에 상품을 반품한 경우 - 반품한 상품의 대가금액

삼.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인도 또는 제공 실적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불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일정기간 내의 실적이 일정금액 또는 수량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한 것은 제외한다)가 있었을 경우, 과징금 대상기간에 그 실적에 대해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리베이트(일정기간 내의 실적에 따라 다른 비율 또는 액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비율 또는 금액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제5조** 법 제15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구입액의 산정방법은 동항의 신청을 한 특정소비자가 과징금 대상기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의 구입 또는 역무 제공의 대가금액을 합계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전조(제3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구입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의 적용)

**제6조** 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소멸한 법인이 실시한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과징금 대상행위 후 거래“라고 한다)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조치(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부당고객유인 해소조치“라고 한다)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징금 대상행위 에 대해,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실시한 과징금 대상행위 후 거래 또는 부당고객유인 해소조치로 간주하여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중 “해당 표시를 한 사업자”는 “해당 표시를 한 사업자와의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와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자"는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2. 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소멸한 법인이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동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동항 중 “해당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와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모두”로 한다.

**제8조** 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 해당 소멸한 법인이 실시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실시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로 간주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 해당 소멸한 법인이 한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불조치, 동항의 인정 신청,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신청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이하, 동조 및 제13조에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신청 등” 또는 해당 소멸한 법인이 받은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인정(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의 취소 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이하, 동조 및 제13조에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인정 등”이라고 한다)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해,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신청 등 또는 해당 합병 후 존속하거나,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인정 등으로 간주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의 적용)

**제10조**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 해당 소멸한 법인이 실시한 과징금 대상행위 후 거래 또는 부당고객유인 해소조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동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하, 단지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라고 한다)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해,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실시한 과징금대상 행위 후 거래 또는 부당고객유인 해소조치로 간주하여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중 “해당 표시를 한 사업자”는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으로, “해당 사업자”는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의 모두)”로 한다.

2.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소멸한 법인이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동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동항 중 “해당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2 이상인 경우 에는 승계 자회사 등의 모두)의 모두”로 한다.

**제12조**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소멸한 법인이 실시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사업승계자 회사 등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징금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실시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로 간주하며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소멸한 법인이 실시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신청 등 또는 해당 소멸한 법인이 받은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인정 등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해서,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실시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신청 등 또는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 이 받은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인정 등으로 간주하며,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되지 않는 권한)

**제14조** 법 제33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1항(소비자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항, 제4조, 제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소비자위원회로부터의 의견 청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및 제4항(이러한 규정을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제15조**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 중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한다. 소비자청장관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 제33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

**제16조** 법 제33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한다.

일. 긴급이면서 중점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또는 표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이. 전호 외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또는 표시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이 가진 전문적 지견을 특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사업소관 대신에게 권한 위임)

**제17조** 소비자청 장관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하려고 하는 사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2. 소비자청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권한행사 결과보고)

**제18조** 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신속하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해 실시한다.

일.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입회검사 혹은 질문한 결과에 따라 판명된 사실

이. 그 외 참고가 될 사항

(지방지분부국장에게 권한 위임)

**제19조** 재무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모두 국세청의 소장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을 특정 사업자(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당사업자 및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해당사업을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재무국장(해당 소재지가 후쿠오카재무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재무지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단, 재무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재무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모두 국세청의 소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특정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해당사업을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세국장(해당 소재지가 오키나와현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오키나와국세사무소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재무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후생노동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특정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후생국장(해당 소재지가 시코쿠 후생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코쿠 후생지국장)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후생노동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농림수산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특정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농정국장 또는 홋카이도농정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경제 산업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특정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해당사업을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경제산업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6. 국토교통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특정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해당사업을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비국장, 홋카이도개발국장, 지방운수국장, 운수감리부장, 운수지국장 또는 지방항공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국토교통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7. 환경대신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특정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게 권한 위임 등)

**제20조** 금융청장관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금융상품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가 행하는 동조 제8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과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 동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금융상 상품중개업자가 실시하는 동조 제11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 중개업과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 및 동항에 규정하는 등록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동법 제33조의 3 제1항 제6호 “나”에 규정하는 등록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 및 금융 역무의 제공 및 이용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1호) 제11조 제6항에 규정하는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실시하는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증권거래 등 감시 위원회에 위임한다.

2.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는 신속하게 그 결과에 대하여 금융청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무국장 등에게 권한 위임)

**제21조** 금융청장관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당 사업자(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단지 “해당 사업자“라고 한다)의 주요 사무소 또는 사업소(다음 항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주요 사무소 등”이라고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해당 소재지가 후쿠오카재무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재무지국장)에 위임한다. 단, 금융청장관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으로, 해당 사업자의 주요 사무소 등 이외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2항에서 “종 사무소 등”이라고 한다) 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항에 규정하는 재무국장 또는 후쿠오카재무지국장 외 해당 종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해당 소재지가 후쿠오카재무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재무지국장)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는 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해당 소재지가 후쿠오카재무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으로, 해당 사업자가 종 사무소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동항에 규정하는 재무국장 또는 후쿠오카 재무지국장 외 해당 종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해당 소재지가 후쿠오카재무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 재무지국장)도 할 수 있다.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제23조**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 제7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무(동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당한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가 된 장소 또는 지역을 포함한 도도부현의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기로 한다. 단, 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쳐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청 장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된 경우에는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이하 동항에서 같다)이 그 사태에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때는 소비자청 장관이 스스로 그 사무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동항 본문에 규정하는 사무를 실시한 도도부현 지사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소비자청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법 중 동항 본문에 규정하는 사무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에게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2009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1월 27일 정령 제368호) 발췌**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14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일(2014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12월 16일 정령 제423호)**

이 정령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12월 27일 정령 제326호)**

이 정령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년 6월 2일 정령 제162호) 발췌**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 향상 및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년 1월 31일 정령 제22호) 발췌**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조 제2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